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 근무경력에 포함 의무화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048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	3
1.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3
2.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7
3.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활성화	10
※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출자 : 정부
2. 제출일 : 2024. 7. 22..
3. 회부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 개정안은 민간을 제외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u>
<u>④</u>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 현행법 제16조제3항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제대군인 군 경력 인정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국가기관은 100% 군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2,271개 중 1,944업체가 반영하여 반영률이 85.6%이며, 사기업체 등은 37.9%만 반영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2021년 88.3%에서 2023년 85.6%로, 사기업체 등은 2021년 53.4%에서 2023년 47.4%로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제대군인 군 경력 인정 실태 현황>

□ 2023년

구 분	합 계 (A+B=C)	군경력 인정 업체수					군경력 인정비율 (A/C)
		소계 (A)	전부인정	의무병	부사관	장교	
국가기관*	924	924	924	-	-	-	100
공공기관	2,271	1,944	1,815	107	8	14	85.6
사기업체 등	14,309	5,423	4,298	532	144	449	37.9
합 계	17,504	8,291	7,037	639	152	463	47.4

* 지방자치단체 포함

* 자료: 국가보훈부

□ 2022년

구 분	합 계 (A+B=C)	군경력 인정 업체수					군경력 인정업체수 (B)	군경력 인정비율 (A/C)
		소계 (A)	전부인정	의무병	부사관	장교		
국가기관*	927	927	927	-	-	-	-	100.0
공공기관	2,253	1,938	1,810	107	8	13	315	86.0
사기업체 등	14,339	5,485	4,360	519	146	460	8,854	38.3
합 계	17,519	8,350	7,097	626	154	473	9,169	47.7

* 지방자치단체 포함

* 자료: 국가보훈부

□ 2021년

구 분	합 계 (A+B=C)	군경력 인정 업체수					군경력 인정업체수 (B)	군경력 인정비율 (A/C)
		소계 (A)	전부인정	의무병	부사관	장교		
국가기관*	920	920	920	-	-	-	-	100.0
공공기관	2,174	1,919	1,791	105	10	13	255	88.3
사기업체 등	12,293	5,376	4,309	467	142	458	6,917	43.7
합 계	15,387	8,215	7,020	572	152	471	7,172	53.4

* 지방자치단체 포함

*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제2호(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¹⁾에 한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사기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사기업체 등은 능력급제, 직무급제 등 직급·급여체계가 다양한바 군 경력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그리고, 개정안은 근무경력에 포함되는 대상을 ‘호봉이나 임금’으로 한정하고 ‘경력’은 제외하고 있는바, 경력을 포함할 경우 중복 혜택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등의 반론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부칙의 적용례(안 부칙 제3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용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그런데,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채용 또는 고용되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이라도 어떤 사정에 따라 새로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함. 심사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3조의2(법률구조 등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u>

□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동 규정은 복무기간이 20년에 못미쳐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의무복무제대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현행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사업 개요>

- (지원목적) 전역 후 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무료지원하여 원활한 사회정착과 생활안정 도모('11. 3. 1부터 시행)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 (지원대상)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으로서,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무료법률 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1항)

-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②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구조사건) 민·형·가사사건,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신청 접수 후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실익 및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구조여부 결정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자료: 국가보훈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사업 실적>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7월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622	197	24	20	46	20	57	20	66	20	41	10	41	10
대상자 수(1) (연말 기준)		41,920명		45,479명		49,295명		53,675명		58,818명		62,530명	
건당 비용(2)		2천원 ~ 4,000천원		20천원 ~ 3,360천원		7천원 ~ 4,567천원		3천원 ~ 2,495천원		16천원 ~ 2,308천원		80천원 ~ 2,671천원	
건당 평균 비용		833천원		435천원		366천원		314천원		268천원		582천원	
건당 평균 변호사 비용		486천원		259천원		208천원		207천원		145천원		449천원	
건당 평균 인지대 등 소송비용		347천원		176천원		157천원		106천원		123천원		133천원	

※ (1)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기준)

(2) 건당 비용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

*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법률자문 등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유족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보훈영역에서 혜택이 많지 않은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것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정착과 생활안정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법률 구조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지원 필요성’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인 바,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활성화

□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추진사항³⁾을 반영하여 제대군인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무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우대하고, 의무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한 기관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취업지원 제도 개선 신설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안 제14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3) 의안번호 제220242, 정부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여부에 따라 필요가 있음
(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취업지원 등) ① (생략)	제14조(취업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u>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u>	② ----- ----- ----- ----- -----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명단 공표,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차별대우 금지 및 취업사실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 1

의무복무자 유형별 비교표

구분		복무기간	복무내용	급여	감독기관
현역	병	18개월(육군) 18개월(해병) 20개월(해군) 21개월(공군)	국토방위	병장 125만원	국방부
	단기복무 장교	ROTC 28개월 학사장교 등 3년		소위 ~ 중위 수준	
	단기복무 부사관	5년 미만			
전환복무*	의무경찰	18개월	치안유지	현역병과 동일	경찰청
	의무경찰(해양)	20개월	해양안전		해양경찰청
	의무소방원	20개월	재난안전·구조		소방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21개월	공공서비스 제공	현역병과 동일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공익법무관	3년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법률사무 지원	중위 수준	법무부
	공중보건 의사	3년	보건소에서 의료지원	중위 ~ 대위 수준	보건복지부
	공중방역수의사	3년	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 지원	중위 수준	농림축산식품부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3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전담	중위 ~ 대위 수준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34개월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민간 근무자 수준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3년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근무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34개월	예술·체육분야 종사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현역복무 간주	상근예비역	18개월	예비군중대 등	현역병과 동일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3년	항해기관사로 해운업체 승선원으로 근무	민간 근무자 수준	해양수산부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3년	교정시설 지원	현역병과 동일	법무부 (교정본부)

* 전환복무는 '21년 부터 모집 중단('23년 완전폐지) // **대체복무요원은 '20년부터 모집

참고 2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 현황

구분		법정의무 복무기간	근거법령	실 복무기간	복무기간 (조정)근거	감독기관
현역	병	2년(육군) 2년(해병) 2년 2개월(해군) 2년 3개월(공군)	병역법 제18조제2항	<u>1년 6개월</u> (육군) <u>1년 6개월</u> (해병) <u>1년 8개월</u> (해군) <u>1년 9개월</u> (공군)	병역법 제19조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
	단기복무 장교	3년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ROTC <u>2년 4개월</u> 학사장교 등 <u>3년</u>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4호	
	단기복무 부사관	4년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7호	군인사법제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임기제) <u>4년의 범위</u>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7호가목 (병역법제20조의 2제1항)	
				군인사법 제6조제7항 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u>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u>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7호다목	
				군인사법제6조제7항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u>3년</u>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7호라목	
전환복무	의무경찰	'21년 부터 모집 중단('23년 완전폐지)				경찰청
	" (해양)					해양경찰청
	의무소방원					소방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	병역법 제30조	<u>21개월</u>	-	국가, 지자체, 사회봉사시설 등
	공익법무관	3년	병역법 제34조의6	<u>3년</u>	-	법무부
	공중보건 의사	3년	병역법 제34조	<u>3년</u>	-	복지부
	공중방역수의사	3년	병역법 제34조의7	<u>3년</u>	-	농림부
	병역판정검사담당 의사	3년	병역법 제34조	<u>3년</u>	-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병역법 제39조	<u>2년 10개월</u> (현역대상) <u>1년 11개월</u> (보충역대상)	-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3년	병역법 제39조	<u>3년</u>	-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34개월	병역법 제33조의8	<u>34개월</u>	-	문체부
기타	상근예비역 *현역복무 간주	2년 6개월 이내	병역법 제23조	<u>18개월</u>	-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현역복무 간주	3년	병역법 제23조의2	<u>3년</u>	-	해수부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20년부터 모집)	3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u>3년</u>	-	법무부 (교정본부)

참고 3

최근 5년간 의무복무 제대군인 전역 현황

□ 현역병 및 보충역 등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역병 (상근예비역, <u>승선근무예비역</u> 포함)		251,575	247,839	233,463	225,833	197,135
		<u>991</u>	<u>930</u>	<u>855</u>	<u>606</u>	<u>640</u>
전환 복무*	의무경찰	13,689	9,288	6,941	3,018	1,122
	의무경찰(해양)	1,508	1,275	967	967	376
	의무소방원	591	710	566	486	93
	소 계	15,788	11,273	8,474	4,471	1,591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34,435	35,996	34,868	33,816	33,243
	산업기능요원	11,450	11,909	11,268	9,162	8,642
	전문연구요원	2,349	2,612	2,825	2,796	2,528
	공중보건 의사	1,179	1,335	987	1,192	1,287
	공중방역수의사	189	148	199	150	148
	병역판정 의사	51	45	49	51	51
	공익법무관	205	178	86	60	54
	예술체육요원	31	10	28	49	29
	소 계	49,889	52,233	50,310	47,276	45,982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	-	1	2	105
합계		317,252	311,345	292,248	277,582	244,813

* 전환복무는 '21년 부터 모집 중단('23년 완전폐지) // ** 대체복무요원은 '20년부터 모집

□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 교	4,906	5,031	5,162	5,606	4,650
부 사 관	5,126	6,517	7,307	8,760	4,962
합 계	10,032	11,548	12,469	14,366	9,612

참고 4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개관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근 거																											
의무복무제대군인 (5년 미만)	채용시험 연령연장	❖ 2년 이상 복무 : 3세, ❖ 1~2년 복무 : 2세 ❖ 1년 미만 복무 : 1세	제16조①																											
	군경력 인정	❖ 호봉, 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 및 지자체, 국·공립학교, 직원 20인 이상 재직 중인 기업 / 제조업은 200인) 권장사항	제16조③																											
	의치 료원	❖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이자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상이처에 한함)	제20조①																											
		❖ 군 복무 중 발병·악화된 중증질환 의료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50% 감면) *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해당	제20조④																											
	취업 지원	❖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사이버교육 실시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경상이자, 저소득·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만 해당	제14조③																											
중기복무제대군인 (5년이상 ~ 10년미만)	진료 지원	❖ 전문교육기관 위탁훈련(1인당 120만원 한도, 총 3회가능, 자부담 10%) 직업능력개발 교육비(1인당 150만원 한도, 자부담 20%)	제13조①																											
	직업 지원금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월 5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제18조의2																											
	법률 구조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지원(군인연금 대상자 제외)	제23조의2																											
	기타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장사법 제23조의2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취업 지원	❖ 취업실시기관 보훈특별고용 실시(국가유공자 준용)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제14조①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월 77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제18조의2																											
	교차 지원	❖ 본인 : 대학 입학금·수업료의 50%까지 감면 * 전역 3년 이내자 지원	제19조①																											
		❖ 자녀 :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 보조 * 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	제19조②																											
	의치 료원	❖ 보훈병원(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군병원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제20조②																											
	대지 보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주택</th><th rowspan="2">사업</th><th rowspan="2">농토 구입</th><th rowspan="2">생활 안정</th><th rowspan="2">학자 금</th></tr><tr><th>아파트 분양</th><th>주택구입 (신축)</th><th>주택 임차</th></tr><tr><td>한도 (만원)</td><td>4,000~ 8,000</td><td>4,000~ 8,000</td><td>2,000~ 5,200</td><td>2,000</td><td>3,000</td><td>300</td><td>학기당 500</td></tr><tr><td>연리(%)</td><td>3.5</td><td>3.5</td><td>3.5</td><td>4.5</td><td>3.5</td><td>3.5</td><td>4.5</td></tr></table>	구분	주택			사업	농토 구입	생활 안정	학자 금	아파트 분양	주택구입 (신축)	주택 임차	한도 (만원)	4,000~ 8,000	4,000~ 8,000	2,000~ 5,200	2,000	3,000	300	학기당 500	연리(%)	3.5	3.5	3.5	4.5	3.5	3.5	4.5	제21조
	구분	주택			사업	농토 구입					생활 안정	학자 금																		
아파트 분양		주택구입 (신축)	주택 임차																											
한도 (만원)	4,000~ 8,000	4,000~ 8,000	2,000~ 5,200	2,000	3,000	300	학기당 500																							
연리(%)	3.5	3.5	3.5	4.5	3.5	3.5	4.5																							
주택 공급 우선	❖ 「공공주택 우선공급(기관추천 아파트특별공급)」 대상에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주택법 근거)	제22조																												
안거 지원	❖ 국립현충원 안장(20년 이상), 국립호국원 안장(10년 이상)	국립묘지법 제5조																												

참고 5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사업

- **(지원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지원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 비용
- **(지원사건)** 민사·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형사사건
 - ※ 법률구조법 등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소송사건
 - 공단이 승소 가능성, 실익 및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구조 여부 결정
 - ※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 **(소요예산)** 20백만원
- **(추진절차)**

